

행 정 명 령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자에 대한 검역 제한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성공적으로 둔화시켰으므로

뉴욕주가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인 주에서 가장 낮은 감염률을 보이는 주로 바뀌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잘 통제하고 있는 주에 해당하므로

주지사가 뉴욕주 재개에 신중하고 점차적인 증거 기반 접근 방식을 착수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한 다른 주들은 코로나19의 더 큰 확산을 겪고 있으므로

뉴욕은 트리스테이트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에 의한 모든 주민의 건강과 복지에 제기된 심각한 위험에 비추어, 뉴저지와 코네티컷의 이웃 주와 함께 협력하여 코로나의 진행 상황을 막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본인 Andrew M. Cuomo 뉴욕 주지사는 헌법과 뉴욕주 법률, 구체적으로 IV조 제1항에 의거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 및 지시합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는 고속 도로 게시판과 모든 뉴욕 공항에서 뉴욕에 진입하는 모든 주요 지점에서 널리 알리는 여행 경보를 발행합니다.

10만 명의 거주자 당 10명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이거나 7일 동안 검사 양성 비율이 10% 이상인 상태에서 뉴욕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보건부 검역 규정에 따라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필수 근로자를 위한 추가 프로토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격리가 불가능한 다른 특별한 상황에서 그러한 조치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이뤄지는 경우 추가 프로토콜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 사이 무료 여행을 허용하면서 트리스테이트 지역을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준 및 프로토콜은 뉴저지와 보건 코네티컷 위원회(Connecticut Commissioners of Health)에 의해 조정될 것입니다.

뉴욕 보건 커미셔너(Commissioner of Health)는 영향을 받는 관할권을 웹 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여행 경보는 2020년 6월 25일 오전 12시 01분에 발효되어 커미셔너가 이를 해지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보건부의 여행 경보에 의거하여 지역 보건부 또는 주 보건부에서 개인에게 발행한 검역 또는 격리 명령 위반은 공중 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시행될 수 있으며, 공중 보건법 12항에 따라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10,000달러의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